

코로나19 대응 자원봉사 현장지침Ⅵ-1

-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적용 수해복구 자원봉사 -

-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자원봉사현장의 방역 태세를 강화하고자 함
- 본 지침은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 시 자원봉사자 및 관리자의 방역실천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, 8월 3일자 기 배포된 코로나19대응 자원봉사현장지침Ⅵ(풍수해복구자원봉사)을 일부 개정*한 것임.
- 본 지침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지침**을 보완 적용하거나 행정부서 등과 협의하여 운영하되 자원봉사자의 안전이 최우선 고려사항임

* '강화된 내용은 밑줄로 강조하였음

** '코로나19대응-생활속 거리두기 방역관리자 업무안내' (중앙방역대책본부, 2020.6)와 '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을 위한 무더위쉼터, 임시주거시설, 지진대피장소 등에 관한 운영지침' (행정안전부, 2020. 6.) 등

1 배 경

- 폭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8곳을 비롯, 전국 50여개 지역에서 크고 작은 피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이 진행 중임
- 코로나19 2차 대유행 위기 방지 및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(8. 16. 서울, 경기, 부산 등)에 따라 자원봉사현장에서도 강화된 방역태세가 필요함

2 방역 관리

- **방역담당자 지정** : 활동 준비부터 종료까지 방역 관리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방역담당자 지정
 - 코로나19감염예방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활동장소의 밀폐도와 밀집도 등을 고려한 위험 평가

- 방역수칙에 근거, 활동 특성에 따른 세부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
- **방역부스 운영** : 재난자원봉사활동 현장에 방역부스를 설치하고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방역 관리
 - 활동 시작과 종료시 열감지기 또는 체온계를 통한 발열자 확인, 건강 모니터링 양식 등에 기록하고 참가자 명부 작성
- **활동중 방역수칙 안내** : 자원봉사자 대상으로 아래의 사항을 공지
 - 활동 전후 손 씻기, 기침은 옷소매로 하기, 개인용품 사용하기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
 - 대면시간을 축소하고, 악수나 신체 접촉 자제
 - 활동 시 서로 충분한 거리(양팔 간격 등) 유지
 - 활동 시 보건용·수술용·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 권장, 젖은 마스크는 교체하도록 안내
 - 활동 중 이상 증상 발생 시, 선별진료소로 이송까지 격리공간에서 대기 (격리공간이 없는 경우, 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)
- **방역 점검 사항** : 방역현장 관리를 위해 아래의 사항 점검
 - 손소독제, 비누, 마스크, 기타 필요한 위생물품을 구비하고 활동에 필요한 복장은 현장 상황에 따라 제시 (방수장갑, 조끼, 장화, 방역복 등)
 - 활동 전/후 방역전문가 (방역봉사단 또는 보건소 등)의 협조를 통해 현장 소독
 - 실내 활동시 주기적으로 환기 실시
 - 활동에 사용한 조끼, 장화 등 다회용 물품은 활동 후 당일 소독

3 자원봉사자 관리

- 사전 신청자 중심으로 현장활동 투입 : 미신청자 참가 자제
- 신청 접수시 참가자의 해외여행 여부나 건강 상태 확인 : 감기증상 및 발열, 호흡기 증상, 해외 방문이나 확진자 접촉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참여 불가
- 피해지역에 최소한의 인원 파견 : 피해복구 활동분야에 숙련된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파견함으로써 복구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,

밀집화를 통한 감염증 발생을 사전에 차단

- 자원봉사자 집단 배치 및 원거리 이동 제한 : 타 광역 시·도로의 자원봉사자 배치, 이동, 활동을 제한함. 피해지역이 속한 해당 광역시·도 내의 기초 시·군구간에도 자원봉사자 이동 자제를 원칙으로 함. 특정 기술이나 장비 관련 과견이 필요할 시에는 선별적으로 대응
- 이동시 교통수단 : 사전 집결 없이 각자 피해복구 활동지로 직접 이동하도록 안내. 가급적 개별 차량을 이용하도록 함
- 휴식을 위한 자원 제공 :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무리가 올 수 있으므로 1시간여 단위로 활동하고 휴식 보장. 휴게 공간을 확보하고 휴식시에도 거리를 유지하고 대화 자제. 음수 및 컵 등은 1인용으로 지급하거나 개인이 지참할 수 있도록 조치
- 자원봉사자 급식 : 식사는 개별 취식, 도시락 배부를 원칙으로 함. 부득이 집단배식시 식사시간 시차 운영, 거리두기 2m(최소 1m) 이상 준수, 한 칸 띄어 일렬식사 또는 지그재그로 앉기, 대화자제 등 권고

4 이재민 지원

- 피해지역 주민 대면활동 : 피해지역 주민 및 이재민과 불필요한 접촉을 삼가
- 급식 지원 : 이재민 대상 급식시 가급적 도시락으로 배부. 단체 배식이 필요할 시 급식 준비 자원봉사자 최소인원으로 운영, 철저한 위생 관리 필수(투명 마스크, 장갑, 위생모, 앞치마 등 착용)